



##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미국

#### 연방판사, FTC 명령에 위반한 사업자에게 사상 최고 700만 달러를 넘는 민사벌 지불을 명령

Michael J. Sullivan 연방검찰관 Robert D. McCallum, Jr. 법무부 민사국장 및 Joe Simmons FTC 경쟁국장은 금일 연방판사가 의료기술의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경쟁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FTC의 명령에 위반한 Boston Scientific Corporation (BSC)에 대해 700만 달러를 넘는 민사벌의 지불을 명했다고 발표했다. 본 건 민사벌은 FTC의 명령 위반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서는 가장 최고액이 되었다.

Patti B. Saris 연방지방법판사는 BSC가 「불성실("bad faith")」하게 행동해서 경쟁자인 Hewlett-Packard Company(HP)에게 혈관내초음파기술(intravascular ultrasound technology)을 라이선스 한다는 의무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다("harmed")」라고 판시했다.

연방판사는 Massachusetts 주 Natick에 본사를 둔 의료가기 제조업자인 BSC에 대해 미국에 민사벌 704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했다. 이제까지 FTC의 반트러스트 관련 동의 명령위반에 대해서 부과된 최고의 민사벌금액은 400만 달러였다.

Saris 판사는 그 판결이유(opinion) 중에서 「BSC의 목적은 HP를 카테터(catheter) 시장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었다. BSC는 독립적 경쟁자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의명령의 문언(letter)뿐만 아니라 정신(spirit)에도 위반했다. FTC의 권위는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경쟁적인 합병의 당사자는 FTC에 금지를 철회시키기 위해 동의 명령에 사인하고 그 후 명령한 약속을 깨뜨리는 모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Joe Simmons FTC 경쟁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우리는 Saris 판사가 본 건의 민사벌에 의해 FTC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만족하고 있다. 본 건에 있어서 민사벌은 FTC의 명령을 받은 모든 기업에 대한 - 그들이 명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 명확한 신호가 되어야 한다. 민사벌은 제재와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두 본 건의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Washington, DC의 법무부 소비자소송과 및 Boston의 연방검사국은 2000년 FTC에 대리해서 BSC를 소추했다. 민사벌의 결정에 관한 공판은 2002년 8월 및 9월에 행해졌다.

혈관내초음파(IVUS) 카테터는 매우 작은 의료가기 인데, 관동맥내에 삽입해서 관동맥내의 화상(畫像)을 부속기구(console)에 비춰 콜레스테롤의 축적과 그 밖의 질환에 의한 관동맥 손상의 위치 및 정도를 심장의(心臟醫)가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심장의(心臟醫)는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이와 같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카테터를 이용한 검사의 정확성은 미국에 있어서 사인(死因)의 제1위인 관동맥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테스트된 신약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도 불가결이다.

1995년 이전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카테터와 함께 이용되는 IVUS 기구의 약 50%가 HP에 의해 제조되었



고, 약 40%가 CVIS라는 회사에 의해 제조되었다. BSC와 CVIS는 IVUS 카테터의 제조업자 3사 중 2개사였다. BSC가 CVIS 및 (IVUS 시장으로의 참입을 계획하고 있다) SCIMED Life Systems, Inc.의 매수를 계획했을 때 FTC는 당해 취득에 의해 BSC는 IVUS 시장의 90%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당해 취득은 반경쟁적인 것으로, BSC가 양사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도를 표명했다.

그 후 FTC는 BSC가 IVUS 카테터의 기술, 라이선스 및 노하우를 HP와 공유한다고 하는 합의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당해 합병의 실시를 승인했다. FTC의 동의명령은 HP가 자신들의 IVUS 기구와 경쟁시키는데 이용하기 위해 BSC로부터 IVUS 카테터를 취득하고, BSC와 경쟁하기 위해 자사의 카테터 개발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Saris 판사는 1998년에 HP가 이 분야에서의 퇴출을 결정한 「실질적인 요인」은 BSC였다고 했다. Saris 판사는 3월 28일 금요일에 행해진 판결에서 BSC가 「불성실하게 행동하고」, FTC의 명령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obstreperous) 접근」을 취하고 최신의 카테터를 HP에게 제공한 것을 거부하며, 카테터에 의한 검사의 정확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automatic pullback device」의 지적재산권을 사

용하지 못하게 하고, HP가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Saris 판사는 HP의 퇴출로 인한 손해의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BSC의 카테터 보다도 우수한 새로운 카테터, the Scout이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BSC의 준독점상태가 연구 개발 예산의 감소와 혁신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했다. 「가장 심각한 걱정은 심장질환 환자가 피해를 받는 것이다...HP의 퇴출후 심장질환 환자에게는 1995년 시점에서 이용가능 했다는 것보다도 못한 기술이 남겨졌다」.

BSC는 FTC가 BSC에게 HP와 공유할 것을 명한 것에 대해 HP와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BSC가 자신들의 계획을 FTC로부터 숨기려고 했다(had tried to "hide the ball")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의명령의 집행에 있어서 FTC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당사자가 동의명령의 내용을 비웃는 것을 억지하는 데 강력한 이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했다.

Saris 판사는 automatic pullback device의 라이선스 거부에 관한 민사벌의 산정시, BSC가 적어도 1998년 3월까지 명령에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FTC가 BSC에게 명령위반에 대해 경고한 1997년 7월 9일 이전의 시기에 관해서는 BSC는 법정최고액의 약 50%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1997년 7월 9일 이후에 있어서 계속

적인 명령준수의 거부에 대해서는 BSC는 「FTC 직원의 법해석을 무시한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할 것을 선택했다」고 하여 최고액의 90% 이상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판은 Washington, DC의 법무부(민사국) 소비자소송과의 Drake Cutini 및 Patrick Jasperse, Sullivan 연방검찰관 소속 Anita Johnson 검찰관보 및 Washington, DC의 FTC 경쟁국 compliance과의 Anne Schenof 및 Kenneth Libby가 담당했다.

2003. 3. 31. FTC 발표문  
(「월간 공정취인」 2003년 4월호 참고)

## FTC, LASIK 시력교정수술사업자의 실증되지 않은 표시에 대하여 동의명령안 공표

FTC는 금일 Lasik(laser-assisted in situ keratomileusis) 굴절시력교정수술 서비스의 최대규모사업자 2개사의 광고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실증되지 않는다는 주장(complaint)과 동의명령안 2건을 공표했다. FTC에 의하면 이러한 광고에서는 Lasik 수술 - 각막을 변형함으로써 안구의 초점조절기능을 개선하고,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의 의존을 경감한다고 하는 것 - 에 의해 평생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되고,

확대경이나 이중초점렌즈를 이용할 필요도 없게 된다고 표시되었다.

동의명령안에 규정된 내용은 The Laser Vision Institute, LLC 및 동 사업주인 Marco Musa, Max Musa 및 Marc' Andrea Musa(이하 이것을 「LVI」라 칭함) 및 Lasik Plus라는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LCA Vision, Inc.(이하 「LCA」라 함)가 향후에 이를 실증할 수 있지 않은 한 이러한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본 건은 허위표시 및 실증되지 않은 표시를 한 LASIK 수술사업자에게 조치를 취한 최초의 사례이다.

「FTC는 LASIK 시력교정수술에 의해 평생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표시를 실증할 수 없는 기업을 적발했다」고 Howard Beales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언급했다. 「의료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은 『과장된 약속을 하지 않으면 FTC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안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 FTC의 주장 내용

FTC의 주장에 의하면 Ohio 주 Cincinnati에 소재하는 LCA 및 Florida 주 Lake Worth에 소재하는 LVI는 모두 LASIK 수술의 장점, 실적 및 효과에 대해 실증되지 않은 표시를 하였다. 더불어 이하의 내용에서처럼 LVI는 LASIK에 관한 「무료」상

담에 관해 허위표시를 하였고, LCA는 LASIK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해서 실증되지 않은 표시를 하였다.

FTC의 주장에 의하면 LCA는 동사의 LASIK 수술 서비스를 받으면 ① 평생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되고, ② 콘택트렌즈나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보다 환자의 눈 건강에 대한 위험이 현저히 경감된다는 표시에 대해서 실증하지 않았다. 또한 LCA는 동사에 의한 수술이 LASIK 수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야간의 빛(형광등, 신호등 등)에 의한 glare(눈부심, 눈의 불편감) 및 haloing(빛이 무리가 생기는, 또는 계속해서 보이는 현상)과 같은 스타버스트 효과(a star-burst effect)의 위험을 제거한다는 표시에 대해서도 실증하지 않았다.

FTC의 주장에 의하면 LVI는 동사의 수술 서비스를 받으면 ① 평생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되고, ② 확대경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며, ③ 원근양용안경(遠近兩用眼鏡)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표시에 대해 실증하지 못했다. 더욱이 LVI는 소비자가 LASIK 수술을 받기에 적당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무료 상담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허위표시를 하였다. 실제로는 LVI와의 최초의 meeting에서 LVI측은 소비자가 희망하는 조치에 따라 수술 요금을 설명하고, meeting 후 수술에 관련한 위험에 대해 당해 소비자

에게 설명하기 전에 또는 당해 소비자가 LASIK 수술을 받기에 알맞은 경우에는 LVI는 당해 소비자에 대해 300달러의 착수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였다. FTC의 주장에 의하면 최초의 meeting 후에는 소비자가 수술을 받지 않을 것을 선택한다고 해도 300달러의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수술 받을 것을 선택했지만 결국 의료상의 이유로 수술을 받게 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착수금 중 200달러만 반환 받게 되었다.

### 동의명령안의 내용

FTC의 동의명령안은 이 2개사가 앞으로 LASIK 서비스의 광고를 할 때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할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CA에 관한 동의명령은 LASIK 수술 서비스 또는 다른 어떠한 굴절수술 서비스에 대해서도 ① 수술에 의해 평생 안경도 콘택트렌즈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되고, ② 수술에 의해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보다도 환자의 눈 건강에 관한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며, 또는 ③ glare 또는 haloing의 위험이 제거된다는 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단, 이러한 표시가 적절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실증될 경우 동 제한은 없다). 「굴절수술 서비스」란 각막의 형상을 불가역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안구의 초점조절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수술기술을 말한다. 더욱이 동의명령안은 모든 굴절수술 서비스의 장점, 실적, 효과 또는 안전성에 관해 장래 행해질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적절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실증된 것이어야 하고, 미국식품의약품청(FDA)에 의해 승인된 기구에 관한 표시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LVI에 관한 동의명령안은 LASIK 수술 서비스 또는 다른 어떠한 굴절수술 서비스에 대해서도 ① 수술에 의해 평생 안경도 콘택트렌즈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되고, ② 수술에 의해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보다도 환자의 눈 건강에 관한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며, 또는 ③ glare 또는 haloing의 위험이 제거된다는 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단, 이러한 표시가 적절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실증될 경우 동 제한이 없다). 동의명령안은 LVI가 다음의 사항에 관한 부당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 : ① 소비자가 LASIK 또는 다른 어떠한 굴절수술 서비스를 받기에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② 소비자가 굴절수술 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 ③ 굴절수술 서비스에 대한 상담 서비스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정보

### 소비자 개발

FTC는 LASIK 시력교정수술에 관심

을 가지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Basic LASIK : LASIK 시력교정수술에 관한 조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는 FTC의 Consumer Response Center에서 또는 다음의 FTC의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입수 가능하다.

이 문서는 ① LASIK 수술이란 어떠한 것인지, ② 어느 소비자가 LASIK 수술의 대상자로 적당한지, ③ 어떻게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발견하는지, ④ 어떠한 위험 및 합병증이 있는지, ⑤ 수술을 하기 전, 수술중, 수술을 한 후에 어떠한 점이 예상되는지, ⑥ LASIK을 대신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 LASIK 수술에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미국안과학회, 국립안과연구소, FDA 등 LASIK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원의 전화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결론으로 FTC는 소비자가 LASIK 수술을 받는 것을 고려할 때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것을 권장한다 : 첫째로 LASIK은 모든 외과수술과 똑같은 유형,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안과 의사와 의논을 한 상태에서 수술의 장점, 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는 눈을 감은 채로(with "eyes wide shut") 수술 받는 것에 사인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LASIK은 노안 - 대부분의 사람이 40세 중반 정도에 확대경을 필요로 할 것 같은 상태 - 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LASIK 수술을 한 경우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LASIK 수술을 받은 후 가능한 한 시력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enhancement)」이라 불리는 추가적인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수술 후에 무엇이 예상되는가에 대해 안과 의사와 협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보험은 LASIK 수술을 포함(cover)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FTC는 각각의 주장 및 동의명령안 공표에 대해 심의를 하고, 5-0으로 의결했다.

2003. 3. 26. FTC 발표문  
(「월간 공정취인」 2003년 4월호 참고)

### FTC, 불법적 행위를 한 채권회수 대행업자 고발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소비자자들이 즉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들을 감금하거나 고소하는 등의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한 뉴저지에 위치한 세 개의 사업자와 그 대표들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을 포함하여 고발을 했다.

FTC는 이 사업자들이 연방거래위원회법과 공정채무회수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상·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전화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실제로 벌린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실제와는 달리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FTC는 이 사업자들이 변제액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더 챙기기도 하었다고 주장했다.

FTC 소비자보호국장인 Howard Beales는 “협박, 거짓말 등은 결코 법에서 인정하는 채권회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고발된 사업자들은 기망행위를 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차용하지도 않은 금액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위협을 가하였다”고 말했다.

FTC는 이 사업자들을 불공정하거나 위협적인 채권회수 수단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채권회수법과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불공정하고 기망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가지의 논점으로 분류된다.

공정채권회수법 위반:

- ①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정보전달
- ② 가혹하거나 과도한 채권회수
- ③ 민·형사소송의 남용
- ④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하거나 비통상적인 정도의 금액 회수

⑤ 채무가 있는지를 다룰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는 사실의 불고지 연방거래위원회법 위반

⑥ 아직 만기가 아닌 채무에 대한 허위의 표시

⑦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구속, 임금 또는 재산이 압류된다고 하거나, 채무자가 형사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등의 허위 진술

한편 FTC는 사업자들의 범위만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금지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2003. 5. 16. 연방거래위원회

### 인터넷 사기행위에 대한 대대적 법집행 착수

최근의 인터넷 사기행위에 대한 법집행 과정에서, FTC, 증권거래위원회, 연방검찰총장과 주 검찰총장들 및 각주의 규제당국들은 인터넷 사기 및 기망적인 스팸메일 발송자들에 대해 모두 45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FTC와 21개의 미국 관계 당국 및 국제기관들은 스팸메일 발송자들이 법집행 및 스팸메일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직을 59개국에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오늘날 인터넷은 무법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인터넷 감시를 위한 공조

는 인터넷에서의 법집행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법집행 당국들이 협력해서 사기행위들을 적발하고 법을 집행한다면 기망적인 스팸메일 발송자들이나 온라인 사기꾼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FTC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와 관련해서는 경매사기를 비롯한 각종 불법 기망행위, 규제대상 물품에 대한 불법적인 판매, 허위의 사업 광고, 불법적인 선불카드의 제공, 아이디 도용 등으로 인한 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 FTC는 8개의 지방법원에서 20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기망적인 웹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송을 수행 중에 있다. FTC에 의한 소송 이외에, 11개의 기타 연방기관 또는 주 당국들에 의해 37건의 소송이 수행중에 있다.

이러한 법집행 활동 이외에, FTC와 17개의 소비자보호단체 및 법집행 당국에서는 이른바 중간경유를 차단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여 기망적인 스팸메일 발송 등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간경유란 다른 조직의 서버를 경유하여 메일을 발송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전자메일을 보낸 발송자나 발송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스팸메일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차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팸메일 발송자들은 이러한 회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3의 서버를 통한 메일 발송은 실제로 규제당국들이 그 발송자를 적발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17개 당국에서는 1,000여개의 잠재적인 중간경유 서버를 찾아냈는데, 이들 중 90%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태리, 폴란드, 브라질, 독일, 대만, 멕시코, 영국, 칠레, 프랑스, 아르헨티나, 인도, 스페인 및 캐나다 등 16개국에 집중되어 있었다. 관련당국들은 이러한 중간경유를 차단함으로써 스팸메일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의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11개 국어로 작성하였고, 14개의 당국이 이에 서명하였다.

“법집행만이 스팸메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직을 통해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이 전송되는 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말했다.

2003. 5. 15. 연방거래위원회

## DOJ, 사업자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경쟁효과 분석

연방법무부(이하 DOJ)는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BroChem Marketing Inc.(이하 BroChem)가 제출한 제안서를 승인했다.

BroChem은 화학물질 유통업자들이 일련의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는 주로 화학물질 생산업자들이 유

통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DOJ는 BroChem이 경쟁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수정한 후에 이러한 제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화학물질 유통업자들이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고 화학물질 생산업자와 유통업자간의 전화 통화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경쟁촉진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 대행은 말했다.

DOJ의 입장은 BroChem에 자문하기 위해 Pate 국장대행이 작성한 검토서에 나타나 있다. 이 검토서에 따르면, BroChem은 가격에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경쟁자나 기타 이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컴퓨터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에 합의함으로써 최초의 제안을 수정하였다. 또한 BroChem은 자신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제안서를 수정했다.

DOJ의 검토서에 따르면, 어느 사업자든 독점금지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독점금지국이 독점금지법에 의거하여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다.

2003. 5. 13. 연방법무부

## EU

### EU위원회, 기업분할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EU위원회 집행위원인 Mario Monti는 기업분할을 위한 가이드라인(best practice guidelines for divestiture commitments in merger cases)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결합 당사자들과 그의 법정대리인들이 EU위원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돕고, 나아가 기업결합 절차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업결합 규칙하에서 기업들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는 합병이나 주식취득을 EU위원회가 인가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의 이행을 약속할 수 있다. 기업결합 당사자들이 EU위원회에 대해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경우에, 기한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업결합 규칙에서는 그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상과정의 효율성, 일관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EU위원회는 기업분할 조건에 있어서 기본 모델과 수임인의 권한에 관한 기본 모델을 작성하였다. 이 두 개의 문서들은 해설 자료에 의해 보완되어 있는데, 기업결합 규칙에 따른 협상이나 집행에 있어서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약정이나 수입인에 관한 조건의 협의과정을 보다 능률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는 기업결합 당사자들이 촉박한 시간적 제약 속에서 협상에 임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본 모델들은 기업결합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망라하려는 것도 아니며,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기업분할 약정서나 수입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규정들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기본 모델들은 EU위원회가 지난 12년간 기업결합 규칙을 집행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기초로 하였으며, 작년 위원회가 마련한 모델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다.

2003. 5. 2. 유럽위원회

## 독일

### 연방카르텔청, 방송사에 대한 기업결합 허가

연방카르텔청은 EM.TV & Merchandising AG와 Karstadt Quelle AG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독일스포츠방송국(DSF)과 온라인 스포츠 포털인 Sport 1에 대하여 주식

취득의 방식으로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없이 허가했다.

DSF TV채널은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축구와 자동차 경주인 Formula One의 중계권을 가지고 있다. DSF와 Sport 1은 현재 파산상태에 있는 KirchMedia 그룹의 계열사들이다.

연방카르텔청장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 계획은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거나 강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한다. 독일내 TV광고 시장에서 EM.TV와 Tele Munchen 그룹(EM.TV가 주식보유) 및 DSF는 선도적인 TV방송 그룹인 RTL과 ProSiebenSat 1의 뒤를 잇고 있다. 원래 Kirch group의 그룹에 속해 있었던 두 기업인 DSF와 ProSiebenSat. 1이 본 건 기업결합을 통해 분리됨으로써 경쟁력집중이 완화된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TV 프로그램 제작 부문에서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시장구조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연방카르텔청은 예측하고 있다.

2003. 5. 8. 연방카르텔청

## 일본

###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개정

최근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관한 표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난 2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5월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 법률은 5월 23일 공포되었다.

개정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합리적 근거없이 현저하게 과대표시 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이나 용역의 내용에 대해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표시의 증명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사업자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표시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집행력의 강화이다. 지자체장이 지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과 함께,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



체가 실시하는 입회검사의 방해 등을 하는 자에 대해서 벌금의 상한액을 3만엔에서 50만엔으로 인상하였다.

셋째는, 절차규정의 정비이다. 배제명령의 고시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에 배제명령은 배제명령서의 등본의 송달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배제명령서의 등본 송달에 있어서는 독점금지법상의 서류의 송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2003. 5. 16. 공정거래위원회

## 버스사업자의 독점금지법 위반형의에 대해 주의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호쿠 지역에서 고속버스 노선의 공동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버스사업자 3사(이하 3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형의에 관한 심사를 실시해 온 결과, 동 법 제3조(사적독점금지) 및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해) 제15항(경쟁자에 대한 거래방해) 위반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의조치 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고속버스란 정류소를 한정해 도시권을 운행하는 급행버스로서 대개 50km 이상을 운행하는 승합버스를 말한다. 또한 공동운행이란 노선이 기점이나 종점의 어느 한편에 영업 거점을 가지는 복수의 버스사업자들이 각사의 운임 수입을 일단 모두 적립한 다음 이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단법인 일본버스협회에 대해서는 이러한 취지를 회원사업자에게 주지하도록 하고, 기차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의 관리자에게는 사용하기수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국토교통성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버스사업자가 심사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 3사는 토호쿠 지구에서 고속버스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이외의 사업자는 없어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노선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3사는 해당 고속버스 노선에 대해 신규참가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하면, 이들은 공동으로 신규참가자가 신청한 운임과 동일한 수준까지 자신들이 운임을 인하였다. 토호쿠 지역에서의 버스사업허가 신청에 있어서 정류소를 사용하는 문제로 관련사업자들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러한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는 기존의 3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3사는 신속한 동의를 하지 않았고 사업개시가 지연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금지법을 즉각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였지만, 3사 이외의 고속버스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 공동운행의 형태로 3사가 신규사업자에게 대응함으로써

신규참가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 사업자 사이의 경쟁의 범위를 넘어서 독점금지법의 위반이 될 우려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다.

이와 함께 3사가 신규참가자의 협의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사유없이 정류소의 공동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경쟁자에 대한 거래방해로서(독점금지법 제19조제15항)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3사의 공동운행체제에 대해서 각사의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는 공동운행에 참가하지 않거나 운임의 공동분배 방식을 배제한 제휴운행으로 변경하도록 운행 형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 버스정류소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그가 공동정류소의 사용을 허가하려면 기존 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사업이 방해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단법인 일본버스협회에 대해서는 회원사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들을 주지시키도록 국토교통성을 통해 통보하는 한편, 국토교통성에 대해서는 버스사업허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정류소 사용과 관련하여 관계사업자



들 사이의 조정을 요할 것을 허가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기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사업자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등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2003. 5. 14. 공정거래위원회

### 일본생명보험상호보험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생명보험상호보험회사(이하 일본생명)에 대한 배제명령과 함께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을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신문광고 등의 표시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일본생명에 대한 배제명령에

관해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생명에 대해 동사가 2001년 1월부터 2002년 11월 사이에 일본소비자에게 판매한 '닛세이 암보험 EX'의 암입원 급부금은 암진단 확정일로부터 지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암의 가능성이 의문시되어 의사로부터 입원을 지시받아 입원중에 암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입원기간의 개시일로 거슬러 올라가 입원 급부금이 지불될 것 같이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경품표시법 위반이라고 하여 배제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표시법 위반 피의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보험상품의 신문광고 등의 표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보험상품의 광고선전활동은 보험상품 분야

에서의 경쟁의 촉진과 직결된다. 반면 신문광고에 의해 보험상품의 내용 우월성이나 거래조건의 유리한 점을 강조한 표시를 하면서 보장내용의 제한조건 등 소비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현저히 작은 문자로 표시한 경우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표시광고를 행하는 각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적절한 상품 선택에 이바지하도록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지적하는 한편, 업계 전체에서의 표시의 정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에 대하여 회원사들이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지도 및 공정경쟁규약을 정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2003. 5. 9.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

본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75-8870~2 / FAX (02)775~8873